

대구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자주하는 질문(FAQ) 안내

아래의 질의·답변들은 통상적으로 자주 있는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으로 신규임용후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절대적인 지침(방침)이 아닙니다. 상황(제도)의 변경, 사안별 특수성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좀 더 자세한 상담(확인)이 필요한 경우 질의계시관(네이버밴드) 및 유선을 통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 후 신규임용까지의 절차 등

Q.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 9.25.(금) 합격자 발표 → 10.5.(월)~10.8.(목) 4일간 임용후보자 현장 등록*(서류제출) → 신원조사 등 → 신규임용후보자 교육(단, 11월 임용예정자는 先임용 後교육) → 신규임용
- * 임용후보자 등록일 전 짧은 시일 안에 신체검사, 각종 서류발급, 원서 작성(사진 준비) 등을 완료 하셔야 하므로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발령 또는 신규교육 예정일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 ▶ 임용후보자 명부(성적)순으로 순차적으로(11월 초·중순 → 1월(상반기 정기인사) → 7월(하반기 정기인사)) 구군 추천 및 임용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수시 인사발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임용이 예정되면 수일 전 해당 구군에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만, 그에 앞서 11월 임용 예정자께는 10월말 문자SMS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이분들은 교육 전 先임용, 추후 재직 중 신규공무원교육 예정입니다.)
- ▶ 그 외의 임용후보자들은 신규임용후보자교육*을 먼저 받은 후 순차적으로 임용됩니다.
* (1기: 11.2.~11.20.(100명)/2기: 11.23.~12.11.(100명)/ 그 외 내년도 교육계획에 따름)
* 기수별 입교 전 개별 통보 예정
- ▶ 위와 같이 11월중 임용 또는 신규교육 예정 연락을 받은 분들은 일정 참고하시어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그 외의 분들은 2021년도에 교육 및 임용 예정이며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Q. 근무기관(구,군) 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근무지 배정 기준은 시험성적, 근무희망지, 주소지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근무희망지는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인사 상황에 따라 비희망지 또는 원거리로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들의 주소지와 근무희망지가 소수의 몇몇 구에만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하게 상당수는 본인 주소지 또는 희망지에 발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임용 전 실무수습 근무는 누가 하나요? 희망하면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 ▶ 신규임용후보자의 실무수습 근무는, 신규임용 전에 시청 또는 시산하 사업소 현장에서 근무 경험을 쌓음으로써 공직사회와 업무환경에 미리 적응하는 좋은 직무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 ▶ 모든 임용후보자가 하는 것은 아니며, **신규임용 발령 시기가 수개월 이상 남은 임용후보자 중 본인 신청 또는 근무 의향 확인을 통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무수습 근무 의향이 있는 경우 **미리 유선연락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실무수습 급여: 월급여(발령 예정 직급의 1호봉) + 직급보조비 + 정액급식비 + 초과근무수당 등
* 대략 월 190만원 정도(세후, 9급 기준)
※ 호봉 반영 및 시보 면제: 실무수습 근무기간 만큼 호봉 반영 및 시보 기간 면제
※ 복무: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함. 1월 만근 시 익월 1일 유급휴가 부여/ 4대보험 가입

Q. 구군 아닌 대구시 본청에 발령날 수도 있나요?

- ▶ 비통합인사 직렬(행정, 사회복지, 세무, 운전)의 경우 구군에 임용되며 본청 임용 불가합니다.
(대구시 市전입시험 제도를 통해 기초→광역 전보)
- ▶ 그 외의 통합인사 직렬(전산, 시설, 공업 등등)은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일부 시본청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규임용후보자 교육 관련

Q.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은 언제 받나요?

- ▶ 임용 전 임용후보자 교육 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11월 임용예정자는 먼저 임용된 후 재직 중 신규공무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 그 외의 임용후보자들은 신규임용후보자교육을 먼저 받은 후 순차적으로 임용됩니다.
- ▶ 교육 순서는 명부에 따른 임용 예정 순으로 직렬별 인원을 고려하여 진행 예정이며, 교육 전에 개별적으로 교육 참여 가능여부를 확인하고(공무원교육원→임용후보자 유선연락) 대상자를 확정 합니다.
※ 2020년도 교육 계획: [1기] 11.2.~11.20.(100명), [2기] 11.23.~12.11.(100명)
※ 2021년도 교육 계획: 연 4회 정도 예정
* 불가피하게 임용 전 위 교육과정 이수를 못한 경우 발령 후 신규공무원 교육을 받게 됨

Q.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 신규 임용후보자 교육 과정은 공직자로서 대민 봉사정신 함양 및 공직가치관 확립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배양하여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구분	계	직무분야	공직가치 및 국시정 과제	소양분야	봉사활동 및 현장방문학습	행정 및 기타
교육시간 (%)	101 (100%)	40 (39.6%)	36 (35.6%)	8 (7.9%)	14 (13.9%)	3 (3%)

- ▶ 2020년 신규교육 과정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의 집합교육(3주)에서 **비대면 채택 온라인화상교육(2주)**으로 변경 운영 예정입니다.

※ 온라인 화상교육을 위한 준비사항

- ① PC/노트북: 인터넷 연결(유선 추천)
- ② 스피커 · 마이크/헤드셋(이어폰 마이크도 가능)
- ③ 웹 카메라(노트북 내장 카메라 또는 웹캠)
- ④ 구글 크롬(Chrome) 설치: <http://www.google.com/chrome> 다운로드

■ 임용 유예 관련

Q. 임용유예란? 어떤 사유로 유예가 가능한가요?

- ▶ 임용유예란 임용 공채시험 합격자가 **군복무, 학업의 계속, 6개월 이상의 질병치료, 임신 혹은 출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무원으로 임용받기가 어려운 경우, 유예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임용을 늦추는 제도입니다.
- ▶ 제출한 임용유예 신청에 대하여 자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임용유예 인정되며, 기간은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인 **2년 이내**입니다. (24개월간 유예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 유예 포함 2년 이내에 임용되어야 한다는 의미)
- ▶ 유예기간 중에도 유예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반드시 대구시에 통보 및 유예 철회
- ▶ 승인된 유예기간 내에 유예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종료일 1개월 전 연장 신청)**
- ▶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도 곧바로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한학기가 남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수업 중입니다. 임용유예 가능한가요?

- ▶ 학기 재학중이므로 유예 신청 사유는 되나(재학증명서 첨부), 학교에 따라 사이버강의 활용 · 야간수업 전환 등 충분히 임용 후에도 학업을 완료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유예 신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내년에 대학원에 진학하려 합니다. 임용유예가 가능한가요?

-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의 임용유예 허용요건인 ‘학업의 계속’은 **현재 진행 중인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시험합격 후에 새로이 등록하여 시작하는 학업의 경우는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학업 사유로 임용유예 허가를 받아 휴학을 하거나 어학연수를 다녀와도 되나요?

- ▶ 임용 유예기간은 유예사유를 해소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므로 **유예기간 중 휴학 또는 연수는 부적절**합니다. 다만, 현재 휴학중으로 복학 신청 시기를 놓쳐 2021년도 복학 예정인 등 불가피하게 일부 휴학기간이 포함돼 있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합니다.

Q.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 남은 학업까지 합하면 2년을 초과하는데 유예 가능한가요?

- ▶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의무복무 기간)는 이 유효기간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2년간의 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보장받습니다.

Q. 다른 지자체(기관)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임용 유예 사유가 되나요?

- ▶ 임용유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임용유예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 현재 유예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의 **임용후보자 등록일(10/5~8)에 서류 제출 시 신청(늦어도 10.16.(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이후에도 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 전 신청 가능합니다.

Q. 임용 유예 시 불이익이 있나요?

- ▶ 임용 유예 자체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초임 발령일이 늦춰지는 만큼 당연히 재직기간을 반영하는 인사(승진, 전보 등) 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Q. 육아를 위한 임용 유예도 가능한가요?

- ▶ 출산 직후(2개월 미경과) 산모인 경우 임용 유예를 권장합니다만, 단순히 육아를 위한 장기간 임용유예는 불가합니다.(단, 육아 등을 사유로 신규임용 직후 휴직을 고려하는 경우 미리 유선으로 상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임용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작성 및 발급 관련

Q. 임용후보자 등록 언제 방문하면 되나요?

수험번호	합격자별 등록기간
10600003~11001110	2020. 10. 5.(월) 09:00~11:30
11001145~11002228	2020. 10. 5.(월) 13:00~15:00
11002246~11003349	2020. 10. 5.(월) 15:00~17:30
11003426~11004548	2020. 10. 6.(화) 09:00~11:30
11004561~11005619	2020. 10. 6.(화) 13:00~15:00
11005625~11200069	2020. 10. 6.(화) 15:00~17:30
11200072~11400679	2020. 10. 7.(수) 09:00~11:30
11400683~13500071	2020. 10. 7.(수) 13:00~15:00
13500105~15700291	2020. 10. 7.(수) 15:00~17:30
15700313~17200085	2020. 10. 8.(목) 09:00~11:30
17200091~17800157	2020. 10. 8.(목) 13:00~15:00
17800158~25100049	2020. 10. 8.(목) 15:00~17:30

- ▶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방문자 밀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본인 해당시간 내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기간 중 다른 일자 방문도 가능합니다.
- ▶ **정시에 오실 필요는 없고 본인 해당 타임 중 편한 시간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1인당 제출·등록 소요시간은 약 10분정도이나 대기인원에 따라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 현장에는 서류작성을 위한 별도공간이 없으므로 **사전에 제출서류를 모두 작성·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 해당날짜에 방문이 힘든데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는 없나요?

- ▶ 등기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 방문 곤란한 경우 대리인 제출가능하나, 보완 필요 시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가급적 본인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자(36.5도 이상 발열, 호흡기증상),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자 등은 직접 방문 하지 마시고 대리인 통해 제출하여 주십시오.
- ▶ **대리인 방문 시 합격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합격자 명의의 제출서류 일체를 미리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서류 발급 위임 절차는 각 발급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목록에 있는 서류 대신 유사한 서류(증빙)로 대체 가능한가요?

- ▶ 불가합니다. 반드시 제출목록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미리 발급받아둔 서류(기본증명서, 초본 등)를 사용해도 되나요?

- ▶ 주소지변경 등이 없어 현재와 내용상 동일하다면 3개월 이내 발급하신 서류(서류상 발급일자과 제출일자 기준)는 가능합니다.(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유효기간인 1년까지 가능)

Q. 발급기관(병원, 주민센터)에서 스테플러 찍힌 채로 받았는데 괜찮나요?

- ▶ 스테플러 찍은 채로 발급받은 서류도 **모두 직접 핀 제거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Q. 건강상 제가 작성이 힘든 상황인데,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해도 괜찮나요?

- ▶ 본인 동의하에 다른 분이 대필하여도 되지만, 작성 내용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내용 확인 후 자필 서명 등 주요란은 반드시 본인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Q. 개명을 해서 시험 응시 때와 이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 서류 작성 등은 현재의 기본증명서상의 성함으로 통일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시험 응시 때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표 및 개명내역이 확인되는 기본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학력증명서, 신체검사서 등 **기타 서류도 개명된 이름으로 통일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시일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용후보자등록원서> 작성 관련

Q. 현재 사는 곳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데 어느 주소를 써야하나요?

- ▶ 제출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 여성인데 군인으로 복무를 하였으면 병역란 어떻게 기재하나요?

- ▶ [○ 여성] 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Q. 응시원서 때와 다른 사진도 사용 가능한가요?

- ▶ 응시원서상의 사진과는 달라도 됩니다. 다만, 이번에 제출하는 임용후보등록서류, 신체검사서, 신원진술서의 사진은 서로 동일해야 합니다.

Q. 흑백사진, 컨셉사진도 사용 가능한가요?

- ▶ 용모 단정한 컬러 증명사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정장을 착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전학한 학교도 다 작성해야하나요? 학력란이 모자라서 다 작성할 수 없어요.

- ▶ 전학은 제외하고 졸업한 학교 위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학력란이 부족한 경우 오래된 학력(초등학교)은 생략하고 작성하십시오.

Q. 현재는 휴학 중인데 중퇴할 예정입니다. 최종학력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 ▶ 현재 기준으로 휴학을 포함하여 졸업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재학' 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Q. 자격면허에 한국사검정시험, 운전면허 등 까지 써야하나요?

- ▶ 운전면허는 기재하지 마시고(단, 운전직은 기재), 그 외 자격·면허는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자격 위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 컴퓨터활용능력, 기사·기능사 등)
- ▶ 동일 종류의 자격이 여러개인 경우 가장 높은 급수 하나만 기재합니다.(예: 컴활1급, 컴활2급 중 컴활1급만 기재)
- ▶ 한국사검정시험, 어학시험(토익, 토플 등)은 반드시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 ▶ 단, 기재한 자격·면허는 모두 증빙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Q. 상벌에 학교나 민간에서 받은 입상내역이나 과태료 내역도 작성해야 하나요?

- ▶ 아닙니다. (상: 시상상 이상만 기재 / 벌: 벌금형 이상만 기재)

Q. 경력사항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인턴(아르바이트 등) 경력까지 작성하나요?

- ▶ 공무원 재직경력이나 국공영 기업체 근무경력, 일반사회경력 등 인사에 중요하게 참고가 되거나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을 쓰시면 됩니다. 일반 사회경력은 해당 직장에서 발급받은 현재 기준의 경력증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 기재한 경력사항은 모두 증빙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정규직만 기재하며 인턴, 아르바이트, 시간제근무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단, 3개월 이상 상근(4대보험 가입) 비정규직의 경우 임용된 후에 인사부서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Q. 경력사항을 꼭 기재하여야 하나요? 경력증명서 발급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 ▶ 반드시 지금 기재(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후 임용 발령 후 인사부서에 호봉산정 등을 위해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Q. 주민등록상 혼자이고 부모님이 안계시면 비상연락처 누구를 기재하나요?

- ▶ 본인과 연락 닿지 않을 경우 대신 연락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형제, 친척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인적사항’ 작성 관련>

Q. 등록기준지를 몰라요

- ▶ 기본증명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에 기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근무희망기관을 임용후보자등록원서와 다르게 기재해도 되나요?

- ▶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라며, 실수로 다르게 기재한 경우 임용후보자등록원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작성 관련>

Q. 한부만 직접 작성하고 한부는 복사해도 되나요?

- ▶ 불가합니다. 총 2부 8장을 원본으로 작성(사진 2부 모두 부착)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재산 사항을 다 기재해야 하나요?

- ▶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해당없음” 으로 기재)

Q. 가족란에 사망한 가족도 적어야 하나요?

- ▶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을 기재하시되 사망자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란까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관련>

※ 당일 발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는 어디에서 받나요?

- ▶ 의료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발급병원이면 가능하며 **미리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발급여부를 가까운 의료기관에 확인하신 후** 검사하시기 바랍니다.(신분증, 증명사진 2매 지참)
 - ※ 일반병원 및 종합검진센터 대부분 가능하며, 치아항목 검진까지 가능한 기관을 권장
- ▶ 임용후보자 등록일 기준 **1년 이내**에 이미 발급받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가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하나, 응시기관과 수험번호 등을 금번 시험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Q. 어떤 경우에 신체검사에 불합격하게 되나요?

- ▶ 합격여부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종합병원장)**이 불합격 판정기준에 따라 검사대상자의 질환 정도 및 담당예정 직무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 (※ 상세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별표 참고)
- ▶ 임용권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거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자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Q. 장애인이면 채용신체검사 불합격되나요?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담당의사 소견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격판정 및 임용 가능합니다.
 - ☞ 합격 기재 예시 : OO질환에 해당하나 ~~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의상자

Q. 군 복무중 의병제대 또는 질병으로 군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나요?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는 임용 시점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현재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는다면 과거 병력 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임용 후 급여 등 관련

Q. 유사경력(민간 경력)이 있어서 호봉 인정받고 싶는데 어떻게 하나요?

- ▶ 호봉확정권자(발령기관 호봉 담당자)는 신규임용자의 초임호봉 확정 전에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호봉에 합산할 경력(공무원경력, 군경력, 유사경력(민간전문분야, 실무수습 등))이 있는 신규 임용자는 신청기간 내 경력 합산신청서와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호봉확정권자는 전력조회,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3개월 이내 초임호봉을 확정합니다.
 - 임용 후 최초 급여일 전 전력조회 등으로 초임호봉확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급별 1호봉으로 급여가 지급되며, 초임호봉확정 완료 후 확정일은 임용일로 소급하므로 초임호봉확정 후 급여의 차액은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 전 유사경력을 동일분야의 호봉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이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해당 직렬 또는 직류의 호봉경력 인정 시 인정되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유사경력의 동일분야로 경력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 전 동일한 직장에서 계속하여 근무 중 경력인정 시 인정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라면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은 자격증 상당계급으로, 동일한 직장에서의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은 근무연수 경력으로 경력인정 요건 중 그에 상응하는 경력 규정에 따라 호봉경력에 반영 가능합니다.

공무원 경력과 군경력을 제외한 유사경력의 구체적 인정률은 환산을 범위 내에서 각 기관별 「호봉경력평가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인정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임용 후 발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임용후보자 등록 시 민간경력 제출을 누락하면 호봉산정이 안되나요?

- ▶ 임용후보자 등록 시 민간경력을 제출하여도 호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간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용후보자 등록 시 민간경력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발령 후 발령기관에서 안내한 신청기간 내에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내한 신청기간 내에 경력 합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초임호봉확정일이 신규임용일로 소급하지 않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확정되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해당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Q. 대구시 실무수습으로 근무한 기간은 추후 자동으로 호봉에 산정되나요?

- ▶ 대구시 소속 기관에서 실무수습으로 근무한 경우 초임호봉확정 시 유사경력으로 호봉에 포함되므로 **임용 후 신청기간 내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직 관련

Q. 현재 재직중입니다. 공무원 임용을 위해 언제까지 그만두어야 하나요?

- ▶ 배치 후 바로 임용이 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대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치된 기관(구·군청)으로부터 임용 예정일을 통보받은 후 그 임용일 전일까지 퇴직처리** 되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금번 임용후보자 등록 시에는 임용 전 후보자 신분이므로 타기관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Q. 유튜브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전 그만두어야 하나요?

- ▶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만,
- ▶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수익 발생)하며 추후에도 계속하여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 이러한 경우에도 본연의 직무에 지장을 주거나, 직무상 비밀 누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정당·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 추가 문의

▶ 질의·응답 : 네이버밴드 가입 및 질의 게시판 활용

- 명칭 : [2020년 제1회 대구시 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안내]
- 링크 : <https://band.us/n/a5ad47ffb27n>
 - ※ 질의가 필요한 경우 활용하며 의무가입 아님

바로가입 QR코드



▶ 전화문의 : 053)803-2759, 2758(대구광역시 인사기획팀)

- ※ 일반적인 질문은 밴드 게시판 활용, 담당자와 상의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선 문의
- ※ 개인별 발령예정일 등 답변은 곤란하오니 양해바랍니다(위 자주하는 질문 참고)